

때문이다.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의 인격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효과적인 방안들에 대한 모색이 절실하게 된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결국 이런 과제는 사회적 수준, 민도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전통적으로 자율과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세분해서 보면 미국과 유럽의 경우가 서로 다르다.

### 3. 언론피해구제제도 일반

명예 등 인격권이나 기타 개인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제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우선 누가 피해구제를 하느냐의 주체를 기준으로 언론계의 자율적인 피해구제와 법제도에 의한 타율적인 피해구제의 방식으로 나뉘볼 수 있다. 자율적 피해구제제도로서 대표적인 것은 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과 개별 언론사의 보도윤리강령을 들 수 있다.

#### 1) 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언론계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중심이 되어 1957년 4월 7일 신문의 날을 제정하면서 신문윤리강령을 제정, 채택했고 이어 1961년 9월 '신문윤리위원회'를 창립하였다. 그 동안 법률에 의해 다뤄졌던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 문제를 언론계가 자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일찍이 반론권을 보장하여 "타인이 주장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록 자기의 관찰 또는 주장과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이를 편집상에 반영하여야 한다"('타인의 명예와 자유' 항목의 제5항)고 규정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창설 후 3년간은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한 제소사건만 다뤘으나 1964년부터는 자체심의 업무를 신설,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1964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제소심의'와 '자율심의'를 병행해 왔는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제소심의는 자연 사라지게 됐고 현재는 자율심의만 하고 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와 통신사에 대하여 권고·경고·해명·정정·취소·사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위반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까지 요구할 수 있다.

신문윤리위원회가 1961년 9월부터 1981년 8월까지 30년간 다룬 제소심의 건수는 모두 215건에 이르며 그 중 99건이 제재 처리됐다. 제재 처리의 결정사유를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으로 전체의 39건(39.4%)이었다.(언론연구원, 언론의 윤리강령과 보도기준, 1991년, 25쪽) 이런 사실은 언론보도에 따른 인권침해가 오래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96년에 개정된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반론권을 다음과 같은 항목에 걸쳐서 한층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다.

####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인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⑥(피의사실의 검증보도)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 평론의 원칙

③(반론의 기회)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개별 언론사 윤리강령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언론계는 자율규제의 움직임이 높았다. 그 무렵 터진 촌지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들은 자체적으로 자율규제 규범으로 ‘기자윤리강령’ 또는 ‘보도윤리강령’ 등을 제정,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에 독자와 시청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둔 바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 윤리강령에서 반론권 조항은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못하고 단지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한편 최근 제정된 ‘연합뉴스 윤리헌장’(1998년 9월 제정)의 경우 반론권 항목을 두고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타사의 윤리강령과 비교가 되고 있다.

- ①고소·고발 등 사건이나 다수의 주장이 대립하는 갈등관계의 사안을 보도할 때에는 반대의견을 신도록 노력한다
- ②범죄의뢰자, 피의자, 피고인의 반론을 신도록 노력한다.
- ③당사자의 반론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대리인,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 ④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회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사화 할 수 있다.
- ⑤범인으로 보도된 후 무죄판결 또는 무혐의 처리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추후 보도한다.

그밖에 언론사들은 윤리규범의 준수를 표방하면서 자체 자율심의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율규제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지만 방송사마다 경쟁적으로 도입된 옴부즈맨제도의 경우 인권침해나 오보를 사후에나 교정한다는 적극적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자사의 해명과 홍보의 기회 내지 수단으로 전락하여 시청자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자율규제는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3) 민형법상 구제제도<sup>1)</sup>

현행 언론피해구제의 법제도는 구제의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 구제제도와 사후 구제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 구제제도는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언론기관에게 그 ‘부작위(不作爲)’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명예 및 기타 인격권의 침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점에서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것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제한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그 허용 범위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시사고발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금지가처분신청도 역시 사전 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적극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후 구제제도는 민사상, 형법상, 그리고 언론법상의 구제제도로 나뉘어 볼 수 있다. 형법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적 구제제도는 국가가 갖는 형벌권의 행사로서 표현 행위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다. 민사적 구제제도는 반론보도청구권처럼 피해자가 표현 행위자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표현행위를 사회질서 위반으로 파악하여 그 행위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피해자에게 만족을 주게 되는 것은 제재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무에서 형사적 처벌은 충분한 응징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분적으로 단기형의 선고 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통한 피해구제를 선호하는 까닭은 공권력을 빌려 공격적인 표현 행위자에 대

1)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조선일보사, 1997), 174-175쪽

해 양값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 고소에 따라 즉각적으로 검찰 등의 수사가 개시되면 민사상 또는 언론법상의 제소에 필요한 증거 등 소송 자료를 획득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사상으로는 언론보도가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되며,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된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인정된다(위자료 청구권). 그리고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으로서 피해자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64조). 이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는 구체적인 실무에서 ‘취소’ 또는 ‘정정’, 기타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sup>2)</sup>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게 된다.

그렇지만 종래의 민형법상 피해구제제도는 소송실무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충분한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3)</sup>

첫째, 민형법상 구제제도가 일반소송절차를 거치므로 피해구제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 등을 요구하게 되어 신속하고 용이한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

둘째, 민형법상 구제제도는 언론사 측의 과실, 고의 등 귀책사유와 법익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한데, 엄격한 소송절차에서 그 입증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피해의 구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언론기관에 대한 단죄는 소극적이고 손해배상액이나 벌금형도 소액에 그치거나 단기형의 선고 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이것은 간접적인 징벌의 효과만 가질 뿐 피해자의 즉각적인 명예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자연 민형법상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4) 반론보도청구권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가 그 특성상 무엇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준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곧 반론권 제도의 도입이 갖고 있는 기본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언론법상 특수한 피해구제제도로 반론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절차가 입법화돼 있다.

서구에서는 오래 전에 일반화된 이른바 반론권 제도는 1981년 언론기본법에 도입된 이래<sup>4)</sup> 그 구제절차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언론피해에 대한 불만 처리 및 구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 및 정정보도청구의 사건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내용에 의해 인권이나 사회적 법익 등이 침해된 경우 이를 심의하여 그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그 후 1987년 제정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 반론보도청구권 제도와 언론중재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그에 더하여 추후보도청구권을 새로이 도입했다. 다시 1995년 말 정간물법 개

---

2) 이를 근거로 종래에 법원은 언론사에게 ‘사죄광고’를 내도록 판결해왔다. 그러나 1991년 헌법재판소는 동아일보사가 민법 제76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된다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며 인격의 존엄에 위해가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명예 회복에 필요한 처분에는 △가해자가 패소한 민사금전 배상 판결문의 신문게재 △형사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문 게재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광고 등의 방법이 있음을 제시했다.

3)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조선일보사, 1997), 492-493쪽

4) 언론기본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말 정간물법 개정에 따라 1996년 7월부터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바꾸어 현실화했다.

정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은 더욱 정리된 모습을 갖추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결정권이 인정됨으로써 중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한층 높이게 됐다. 물론 제5공화국의 언론통제상황에서 언론기본법이 제정되고 반론권 제도가 도입된 정치적, 역사적 성격은 분명 지적돼야 하겠지만 반론권 제도 자체는 그 나름대로의 정당성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론권은 본래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된 특정 사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집단 등 이해관계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반박문을 게재하거나 방송하여 이미 행해졌던 사실보도에 대하여 무료로 반박을 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정간물법상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의 반대 진술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과 신속한 중재절차와 재판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언론을 상대로 동일한 매체 영향력을 이용케 했다는 점에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실질적인 언론피해구제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4. 반론권과 언론의 자유

한편 반론권이 법제화되면서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 내지 편집권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반론권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언론에게는 편집권의 독립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반론보도문을 무료로 지면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로서 편집권과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면 편집권은 전적으로 언론이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다. 언론이 전문적인 관행과 판단에 따라 외부의 간섭 없이 정보나 의견을 자유롭게 취사선택할 독립적인 기능이 보장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편집권이다. 그런데 반론권이 제도화되고 확대되면 그만큼 언론의 편집권 행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1974)’ 사건에서 플로리다주의 반론권법을 위헌이라고 판시했는데, 신문의 편집권이 반론권보다 우선이라고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 판례에 따라 미국에서 반론권 제도는 신문에 대하여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고전적인 언론자유 개념이 철저하게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론권이 편집권을 위협해서는 언론자유가 결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반론권은 언론의 편집권과의 충돌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도 논란거리의 하나이다. 언론의 입장에서 반론보도를 수용하는 것이 귀찮고 두려워 정작 다루어야 할 사회적 쟁점을 다루지 않고 회피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FCC가 방송 반론권의 대표적인 제도였던 Fairness Doctrine을 포기한 것도 그런 이유로 해석되고 있다. 방송국들은 Fairness Doctrine에 입각하여 복잡한 쟁점을 적극 다루기보다는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해 아예 보도를 회피하는 경향이 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 반론권의 제도화가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 5. 언론보도의 현실과 대응

1990년대부터 반론청구 및 언론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언론의 보도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예컨대 마감시간에 따른 불충분한 사실 확인, 소문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보도, 특종의식과 속보 등 무리한 취재경쟁, 상업주의적 경쟁에 따른 선정적 보도, 출입처취재시스템과 보도자료에 따른 발표저널리즘, 기자 개인의 전문지식 및 경험 부족과 윤리의식의 부재 등 다양한 원인들을 들 수 있다.